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8. 8. 24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용산역전면 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/ 용산구 한강로3가 40-70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구조1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〈 구조안전 분야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슬래브 시공용 데크 적용시 시공중 콘크리트 추가 하중을 반영하여 검토하고, 필요시 동바리 설치 등 시공유의사항을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. ○ 화재안전측면에서 고강도콘크리트 사용에 따른 폭열방지대책 및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. ○ 다양한 구조, 공법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각 부의 접합부에 대한 상세를 추가하고, 특히 장스판 철골보의 RC측과 접합 시 해당접합부의 내력을 검토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. ○ 기둥축소량을 고려한 상세설계 및 시공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. ○ 수직재와 수평재의 콘크리트 강도비가 1.4를 초과하는 부위의 대처계획을 법적근거에 준하여 검토 바람. ○ 탑다운 구조계산서에 지상층의 하중도 포함시켜 PRD기초나 기둥 설계시 고려된 시공하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바람. ○ 지상층에서 탑다운 공사가 분리되어 진행되므로 콘크리트 타설이 포디움과 고층부 사이에서 시공조인트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 바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8.08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8. 8. 24(금)		
사업명/신청위치	용산역전면 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/ 용산구 한강로3가 40-70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구조14-1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<p>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 < 구조안전 분야 >(계속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시방서에서 정의한 시공하중을 확인하여 부재설계 적용 검토 바람.○ 임시기초(Top-Down 위한 PRD 등)의 capacity가 영구기초 시공시까지 받아야 하는 하중을 D.L.와 작업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이 되는 지 확인하기 바람.○ X6. Y5 기둥 이전에 대한 건축심의 의견은 차량회전반경 등을 고려할 때 현재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.○ 특수구조감리시 건축법상에서 규정된 부분 이외에 지하층 역타공법 등 건축물 골조 전반에 대하여 관계전문기술자에 의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기 바람. 끝.			

2018.08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